

의안번호	2208432
의 퇴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5.8.1.
추계번호	25B11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2억원, 2031년 152억원 등 향후 5년간 680억원(연평균 136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안 제15조의2)	92	125	154	158	152	680	136

-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축물 인증제도 유형별 실적자료와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실태조사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정주체별 분담비가 불확정적이므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금액으로 추산함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2제2항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1)에 따른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제2항) (현행)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u>할 수 있음</u> (개정안)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u>하여야 함</u>	의무규정

1) 안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①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5조의2제2항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	· 개정안에 따라 현행 재량사항이던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추가재정소요는 인증유효기간 내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할 때 소요 비용에서 현행 정부 실태조사 비용을 차감하여 추산함 <table> <tr>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r> <td>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규정)</td> <td>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의무규정)</td> </tr> </table>	현행	개정안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규정)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의무규정)
현행	개정안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규정)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의무규정)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²⁾ 전망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정주체별 분담비가 불확정적이므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금액으로 추산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2025.4.)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토교통부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물 중 표본추출을 통해 일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실태조사는 녹색건축물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납부된 수수료 수입을 통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점검 또는 실태조사(이하에서는 ‘실태조사’라 한다)가 시행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 예산이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음³⁾

[표 2]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24	2025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운영(인증제 운영)	759	55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행주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인증 기간 중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인증 후 5년 차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3)

[인증제도별 실태조사 현황]

수행년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건수	결과	건수	결과	건수	결과
2020	13건	이상없음	6건	이상없음	-	-
2021	-	-	20건	이상없음	20건	이상없음
2022	50건	이상없음	20건	이상없음	-	-
2023	50건	이상없음	20건	이상없음	-	-
2024	80건	이상없음	7건	이상없음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증유효기간 내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기간 중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 소요 비용에서 현행 정부 실태조사 비용을 차감하여 추산할 수 있음

- 인증대상 건축물의 인증⁴⁾ 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인증유형별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인증 신청이 예상되는 대상 물량을 전망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정주체별 분담비가 불확정적이므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금액으로 추산함

[표 3] 건축물 인증현황: 2013~2024년

(단위: 건)

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유효기간 10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10년)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5년~10년 ¹⁾)		합계	
	예비인증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2013	—	—	461	181	483	244	944	425
2014	—	—	506	299	683	351	1,189	650
2015	—	—	1,013	367	859	510	1,872	877
2016	—	—	1,089	554	1,072	567	2,161	1,121
2017	10	0	1,650	801	1,013	752	2,673	1,553
2018	26	4	2,737	981	1,145	855	3,908	1,840
2019	35	6	2,838	1,141	1,196	973	4,069	2,120
2020	491	14	2,282	1,233	1,288	1,036	4,061	2,283
2021	1,009	87	2,606	1,196	1,436	945	5,051	2,228
2022	929	325	2,264	1,292	1,458	856	4,651	2,473
2023	1,366	517	2,350	1,597	1,428	1,074	5,144	3,188
2024	1,455	778	2,185	1,839	1,199	1,175	4,839	3,792
소계	5,321	1,731	21,981	11,481	13,260	9,338	40,562	22,550
합계	7,052		33,462		22,598		63,112	

주 1.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24.7. 시행)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4)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건물 허가 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준공 후 본인증이 이뤄짐

가. 실태조사 물량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이뤄지는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각 인증제도의 본인증 후 5년차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27~2030년 동안은 2022년부터 2025년에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5년 차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 때 2025년 본인증 건수는 2025년 6월 기준 2배를 연간 실적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 2031년 실태조사 물량은 인증제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추산함
 -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건수는 본인증의 연평균 증가율(9.7%, 2015~2024년)을 적용하여 추산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025년부터 제로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전 신청건에 대한 본인증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매년 전년대비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 신청 추세가 뚜렷하지 않아 전년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실태조사 물량의 상·중·하등급 물량은 해당 인증제도의 유형별로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인증제도별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4] 인증제도 유형별 실태조사 물량 추정결과: 2027~2031년

(단위: 건수)

	2027	2028	2029	2030	2031
녹색건축 인증	856	1,074	1,175	933	1,0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292	1,597	1,839	1,874	1,50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25	517	778	1,084	1,084
합계	2,473	3,188	3,792	3,891	3,607

나. 실태조사 단가

- 실태조사 비용은 건축물 연면적별 조사범위의 차이에 따른 난이도에 따라 상·중·하등급으로 구분하여 비용이 산정되며, 유형별 단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실태조사 수수료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표 5] 인증제도 유형별 실태조사 단가

(단위: 만원)

인증제도 유형	상급 (연면적 10,000㎡이상)	중급 (3,000㎡ 이상 10,000㎡ 미만)	하급 (3,000㎡ 미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540	310	17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70	340	180
인증제도 유형	상급 (연면적 10,000㎡이상)	중급 (5,000㎡ 이상 10,000㎡ 미만)	하급 (5,000㎡ 미만)
녹색건축물 인증	439	415	39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중 1회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실태조사비용에서 현행 사업비(5.5억원⁵⁾)를 차감하여 추산할 수 있음

5)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운영(인증제 운영)’ 2025년 예산 5.5억원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녹색건축 인증 ($A=a \times b$)		3,823	4,982	5,660	4,668	5,315	24,447
물량(a)	상급	285	358	391	311	341	1,685
	중급	267	335	367	291	319	1,579
	하급	304	381	417	331	363	1,797
단가 (b)	상급	4.7	4.9	5.1	5.3	5.5	—
	중급	4.5	4.6	4.8	5.0	5.2	—
	하급	4.2	4.4	4.5	4.7	4.9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c \times d$)		5,019	6,542	7,608	8,151	6,774	34,095
물량(c)	상급	498	661	703	750	600	3,212
	중급	439	486	581	562	450	2,518
	하급	355	450	555	562	450	2,372
단가(d)	상급	5.8	6.0	6.3	6.5	6.8	—
	중급	3.3	3.5	3.6	3.7	3.9	—
	하급	1.8	1.9	2.0	2.1	2.1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C=e \times f$)		872	1,533	2,676	3,499	3,633	12,214
물량(e)	상급	25	48	63	109	109	354
	중급	79	157	270	325	325	1,156
	하급	221	312	445	650	650	2,278
단가(f)	상급	6.1	6.4	6.6	6.9	7.2	—
	중급	3.7	3.8	4.0	4.1	4.3	—
	하급	1.9	2.0	2.1	2.2	2.3	—
실태조사 사업비 합계($D=A+B+C$)		9,715	13,057	15,944	16,317	15,723	70,756
현행 실태조사 사업비(E)		550	550	550	550	550	2,750
추가재정소요($D-E$)		9,165	12,507	15,394	15,767	15,173	68,006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축물 인증제도 유형별 실적자료와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실태조사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정주체별 분담비가 불확정적이므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금액으로 추산함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축물 인증제도 유형별 실적자료와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실태조사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정주체별 분담비가 불확정적이므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금액으로 추산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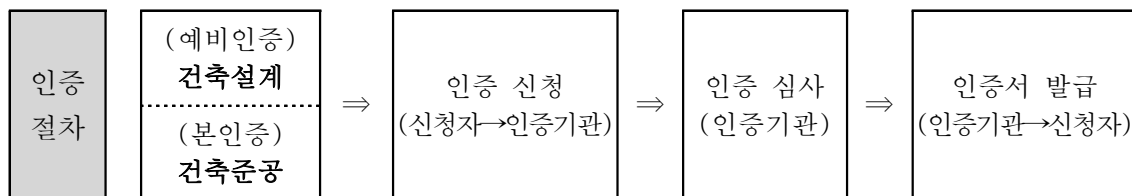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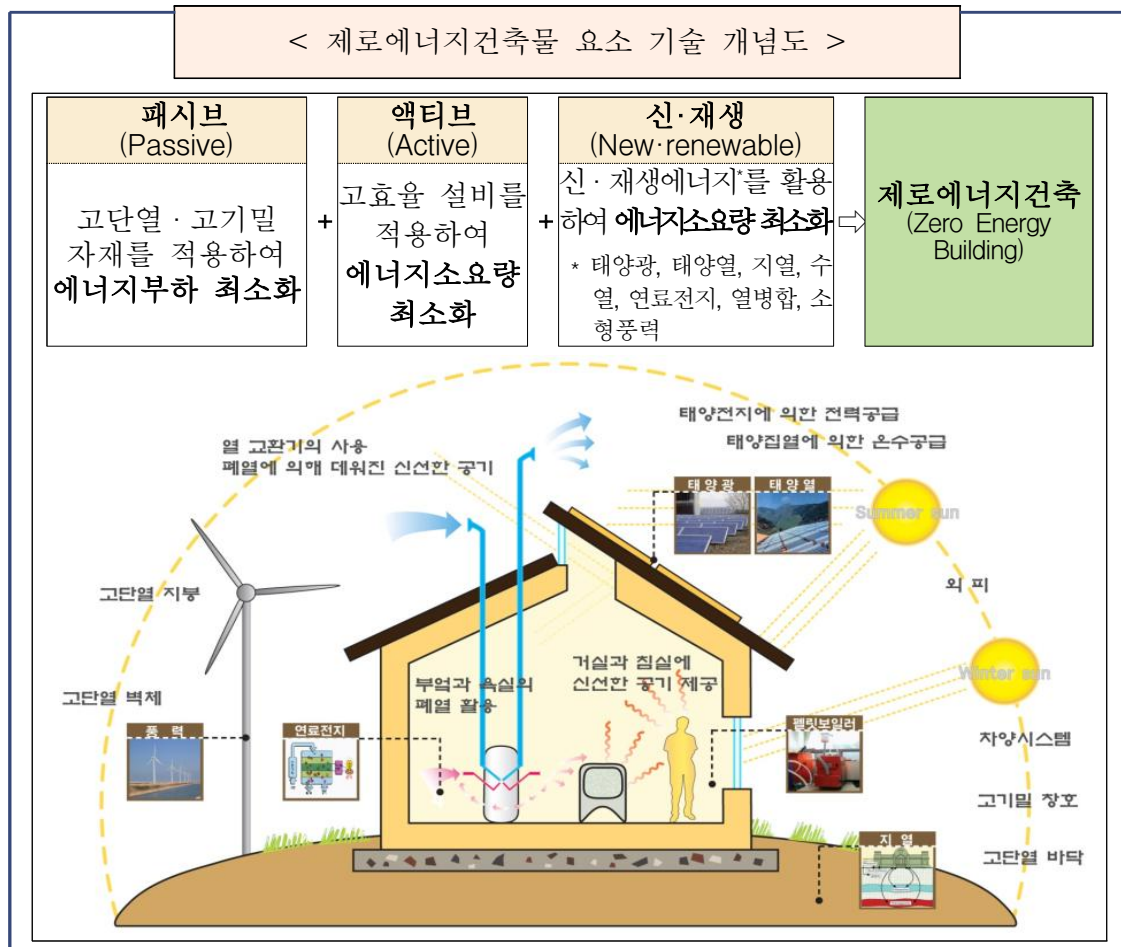
-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02년부터 국토부·환경부 공동운영(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근거) 「건축법」 제66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13.2.23)으로 근거변경(제16조)
- ** (해외) 美 LEED, 英 BREEAM, 日 CASBEE, 싱 GREEN MARK
- (인증대상) 연면적의 합 3,000㎡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녹색건축법 제16조)
 - (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평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



[참고자료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배경) 파리협약('15)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자발적으로 수립·이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1.10월 NDC 상향안* 발표
 - * '30년까지 '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탄소중립추진)
 - 건물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제로에너지건축물'(신축) 및 '그린리모델링'(기축)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
- (ZEB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녹색건축법 제2조)



- (활성화 방안) 정부는 ZEB를 조속히 보급·확대하기 위해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최초, ’14.7)하였으며, 의무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ZEB 의무화 로드맵(수정), ’2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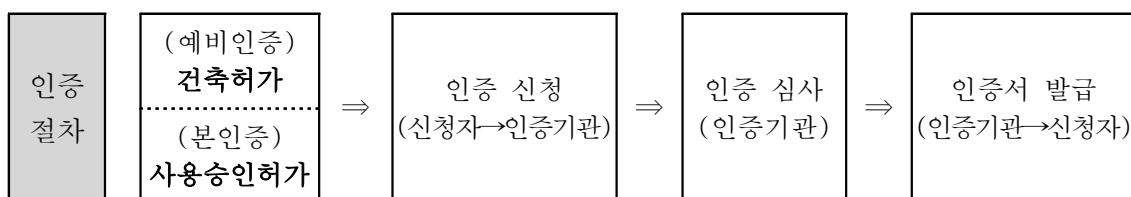
	2020	2023	2025	2030
공공 (인증 제도)	1천㎡ 이상 (5등급)	5백㎡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일부용도·규모 검토중 (4등급)	일부용도·규모 검토중 (3등급)
민간 (설계 기준)	—	—	1천㎡ 이상, (5등급 수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5백㎡ 이상, (5등급 수준)

- (인증조건) 에너지효율등급(1++ 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인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최고1+++~ 최저7등급)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 (인증절차) 건축허가(설계도서_서류) 과정에서 평가되는 예비인증과 사용
승인허가(준공도서_서류 및 현장) 과정에서 평가되는 본인증으로 구분



□ (인센티브) ZEB 인증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

<주요 인센티브 발채>

구분	내용												
①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용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3년거치 5년 분할)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③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높이)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15% 적용(지방건축위원회 심의 必) <table><tr><th>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④ 세제 혜택 (취득세 감면)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20% 감면(최초 1회, 준공 후 100일 이내) <table><tr><th>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완화비율</td><td colspan="3">20%</td><td>18%</td><td>15%</td></tr></table>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20%			18%	15%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20%			18%	15%								
⑤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공공임대/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⁶⁾

-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
 - － * 연면적 1천m²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2.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고시”.

기존		통합안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table><tr><th>등급</th><th>에너지 자립률 (%)</th></tr><tr><td>1</td><td>100 이상</td></tr><tr><td>2</td><td>80 이상</td></tr><tr><td>3</td><td>60 이상</td></tr><tr><td>4</td><td>40 이상</td></tr><tr><td>5</td><td>20 이상</td></tr></table> *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취득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및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table><tr><th rowspan="2">등급</th><th>주거용</th><th>비주거용</th></tr><tr><th>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th><th>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th></tr><tr><td>1+++</td><td>60 미만</td><td>80 미만</td></tr><tr><td>1++</td><td>90 미만</td><td>140 미만</td></tr><tr><td>1+</td><td>120 미만</td><td>200 미만</td></tr><tr><td>1</td><td>150 미만</td><td>260 미만</td></tr><tr><td>2</td><td>190 미만</td><td>320 미만</td></tr><tr><td>3</td><td>120 미만</td><td>380 미만</td></tr><tr><td>4</td><td>270 미만</td><td>450 미만</td></tr><tr><td>5</td><td>320 미만</td><td>520 미만</td></tr><tr><td>6</td><td>370 미만</td><td>610 미만</td></tr><tr><td>7</td><td>420 미만</td><td>700 미만</td></tr></table>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	100 이상	2	80 이상	3	60 이상	4	40 이상	5	20 이상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1+++	60 미만	80 미만	1++	90 미만	140 미만	1+	120 미만	200 미만	1	150 미만	260 미만	2	190 미만	320 미만	3	120 미만	380 미만	4	270 미만	450 미만	5	320 미만	520 미만	6	370 미만	610 미만	7	420 미만	700 미만	<table><tr><th rowspan="2">등급</th><th>제1호</th><th colspan="2">제2호</th></tr><tr><th>에너지 자립률 (%)</th><th>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th><th>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th></tr><tr><td>+</td><td>120 이상</td><td>-10 미만</td><td>-70 미만</td></tr><tr><td>1</td><td>100 이상</td><td>10 미만</td><td>-30 미만</td></tr><tr><td>2</td><td>80 이상</td><td>30 미만</td><td>10 미만</td></tr><tr><td>3</td><td>60 이상</td><td>50 미만</td><td>50 미만</td></tr><tr><td>4</td><td>40 이상</td><td>70 미만</td><td>90 미만</td></tr><tr><td>5</td><td>20 이상</td><td>90 미만</td><td>130 미만</td></tr></table>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등급	제1호	제2호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	120 이상	-10 미만	-70 미만	1	100 이상	10 미만	-30 미만	2	80 이상	30 미만	10 미만	3	60 이상	50 미만	50 미만	4	40 이상	70 미만	90 미만	5	20 이상	90 미만	130 미만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	100 이상																																																																																		
2	80 이상																																																																																		
3	60 이상																																																																																		
4	40 이상																																																																																		
5	20 이상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1+++	60 미만	80 미만																																																																																	
1++	90 미만	140 미만																																																																																	
1+	120 미만	200 미만																																																																																	
1	150 미만	260 미만																																																																																	
2	190 미만	320 미만																																																																																	
3	120 미만	380 미만																																																																																	
4	270 미만	450 미만																																																																																	
5	320 미만	520 미만																																																																																	
6	370 미만	610 미만																																																																																	
7	420 미만	700 미만																																																																																	
등급	제1호	제2호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비주거용 에너지소요량 (kWh/m² · 년)																																																																																
+	120 이상	-10 미만	-70 미만																																																																																
1	100 이상	10 미만	-30 미만																																																																																
2	80 이상	30 미만	10 미만																																																																																
3	60 이상	50 미만	50 미만																																																																																
4	40 이상	70 미만	90 미만																																																																																
5	20 이상	90 미만	130 미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